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별법령의 규정 및 비합리적인 요율로 운영되고 있어 2008. 3. 7. 전면 개정공포되었으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실과명이 변경되어 개정된 실과소명에 따라 요율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이관 8개 항목, 실과명 변경 10개 항목 총 18개 항목 수정
(안 제3조①항 관련)

- 개정내용

연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3	공장등록 증명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4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5	차고지 설치확인	민원봉사과	건설과	업무이관
6	공연장 등록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7	공연장 등록변경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8	유통관련업 등록 (영화,음반,비디오,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9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11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1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13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14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문화관광과	문화경제과	과명변경

연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1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과	과면경 변
1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역도시과	민원봉사과	업무관 이
17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스포츠사업단	관광경제과	업무관 이
18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스포츠사업단	관광경제과	업무관 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08. 4. 11 ~ 5. 2. 실시(의견없음)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민원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10,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10,000원	
○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5,000원	
3. 문화체육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관광경제과 소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통	1,000원	
5. 건설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6.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30,000원	
7. 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